

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지역상권 활성화, 문화생활 증진 등을 위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등록된 제2종 박물관과 미술관을 시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안내표지 설치대상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,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등록된 제2종 박물관·미술관 추가

나. 유효기한을 2022년 11월 25일까지로 재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

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호 중 표 6-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표 6-1>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

구 분	시설의 종류
산업·교통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·일반·도시첨단산업 단지 -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-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- 항공법에 의한 공항 -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-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-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-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(대형승합차 10 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) 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
관광·휴양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-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

구 분	시설의 종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㎡ 이상의 공원 -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, 사적지, 명승지 등 관광명소 -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-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- 관광진흥법 제70조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관광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
공공·공용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·문화체육시설(도서관, 시민회관, 종합운동장 등) -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및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- 종합사회복지관 -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-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-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- 대사관,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-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-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- 노인복지법 및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-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, 성당, 교회,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㎡이상 -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-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-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

구 분	시설의 종류
	-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7. 유효기간

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「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」(국토교통부 예규 제143호)은 폐지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7. 유효기간</p> <p>이 예규는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<u>2019년 11월 25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>17. 유효기간</p> <p>-----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022년 11월 25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